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205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5 월 3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국민연금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국민연금공단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322002호 [2006.11.07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5.25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결과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통계 작성항목 - 주요 현황 8종 - 가입자 현황 28종 - 급여 현황 43종 - 장애·유족연금심사 현황 7종 - 심사청구 현황 2종 - 기금운용 현황 2종 - 부록(징수 현황) 2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통계 작성항목 - 주요 현황 8종 - 가입자 현황 28종 - 급여 현황 43종 - 장애·유족연금심사 현황 7종 - 심사청구 현황 2종 - 기금운용 현황 2종 - 부록(징수 현황) 9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연금 보험료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 공단에 이관된 이후 징수 관련 통계와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 및 관리 -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통계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중복 공표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 방지하고자 2020년 통계연보부터 삭제 - 과거 공단이 생산한 통계지표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많음에 따라 학술적·연구적 가치를 위하여 복원하여 부록으로 제공